

2022년 제1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97-17 외 1필지 (창고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 12. 16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로지스밸리 에이치티앤에스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97-17	관련지번	297-18	
	대지면적	46,087.3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준공업지역, 항만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1,911.35㎡	건폐율	69.24%	층수 지하 : - / 지상 : 4층
	주 용 도	창고시설	구 조	프리카스트콘크리트 구조(PC)+공업화 박판강구조(PFB)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36m	용적률	149.17%	연면적 합계 89,637.23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구조안전확인서가 2개인데, 주 책임기술사는 PC부분의 기술사로 기술하고, 기계전기 비구조요소에 “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, 수 변전설비,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등”을 기입바람. ○ 비틀림 제어용으로 추가된 콘크리트 벽체와 PC기둥의 접합 상세를 추가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한 거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.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압밀침하 여부는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착공 전 압밀시험을 실시하여 차량하중 재하에 따른 압밀침하를 검토하기 바람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2년 제1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서구 청라동 6-7 외 1필지 (업무시설(오피스텔), 제1·2종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2. 12. 16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청라아트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		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	
	지 번	6-7	관련지번 6-8
	대지면적	12,127.2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,281.2㎡	건폐율 27.06%
	주 용 도	업무시설(오피스텔), 제1·2종근생	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,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
	최고높이	162.25m	용적률 716.28%
		층수 지하 : -5층 / 지상 : 49층	건축물 동수 2동
		연면적 합계	135,720.03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헬리콥터 착륙장의 집중활하중 적용내용 표기바람. ○ LB1등 주근 2단배치시 상하를 일치 시킬 것. ○ 착공전까지 건축감리 구조협력 계약 완료하여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것.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